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2022. 6. .

발 의 자 : 김영미 위원 외 1인

1. 제안이유

- 「공직선거법」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마포구의회 의원정수가 1명 증원(18명→19명)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변경 [행정건설위원회: 8명→ 9명]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직선거법」

나. 기타

- 1) 개정 조례안: 붙임
- 2)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8명”을 “9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행정건설위원회 - <u>8명</u></p> <p>3. (생 략)</p>	<p>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9명</u></p> <p>3.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관계 법령 】

□ 「공직선거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 공직선거법 [별표 3]

시·도별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표(2,978명)

시 도	총 정 수
서울특별시	424
부산광역시	182
대구광역시	120
인천광역시	122
광주광역시	68
대전광역시	63
울산광역시	50
경기도	460
강원도	174
충청북도	136
충청남도	176
전라북도	198
전라남도	247
경상북도	288
경상남도	270

제24조의3(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이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라 한다)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②~⑤ 생략

⑥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②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공직선거법」 제20조, 제23조, 제26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의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별표와 같다.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자치구별	선거구명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소 계	17	의원정수 19 (지역구 17, 비례대표 2)
마포구	마포구 가 선거구	2	공덕동
	마포구 나 선거구	2	아현동, 도화동
	마포구 다 선거구	2	용강동, 신수동

	마포구 라 선거구	2	대흥동, 염리동
	마포구 마 선거구	2	서강동, 합정동
	마포구 바 선거구	2	서교동, 망원1동
	마포구 사 선거구	2	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마포구 아 선거구	3	상암동, 성산2동